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장·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위탁 중인 정보교과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 위임(안 제17조의2, 안 제39조, 안 제41조의3)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립
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지자체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나. 교과용도서(정보 교과) 검정·인정에 관한 사무 위탁(안 제45조)

- 1) 정보 교과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
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현행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과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 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1조의3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5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학·과학)”을 “(수학·과학·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수학 및 과학”을 “수학·과학 및 정보”로,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

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그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u>다만, 제4호 본문에 따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u> 1. 2. (생략) 3. 삭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 ----- ----- ----- ---. <u><단서 삭제></u>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부장관 소관의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
범위가 2개 이상의 지방고용
노동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5.·6. (생략)

<신설>

5.·6.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
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
 하려는 중소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한다.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해당
 하며, 중소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
 우(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5조(교육부 소관) ①·② (생 략)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생 략)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과학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 다)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아. (생 략)

4.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

제45조(교육부 소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2. (현행과 같음)

3. -----
-----(수학·과학
· 정보 -----

가. ~ 아.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 -----
----- 수학·과학
및 정보 -----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4